KB퇴직연금정기예금 상품설명서

이 <u>설명서</u>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KB 퇴직연금정기예금 특약, 거치식예금 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 약관이 적용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.

1 상품 개요

■ 상 품 명 : KB 퇴직연금정기예금

■ 상품특징 :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을 **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유형의**

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기예금

2 거래 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<u>실제</u>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약관 등에 따릅니다.

구 분	내용		
가입자격	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이 정한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사업자		
가입금액	제한 없음		
계약기간	고정금리형	1개월에서 60개월(5년)이내에서 연,월,일 단위로 계약	
	변동금리형	1년(회전기간 3개월, 6개월 2종류)	
세제혜택	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불가		

(세금공제 전, 연%)

	(*****			
	구분	계 ⁹	이자율	
		월구간	일구간	(연%)
	고정 급	1개월~ 3개월 미만	28일 이상 ~ 93일 미만	0.75
		3개월~ 6개월 미만	93일 이상 ~ 183일 미만	1.05
		6개월~ 9개월 미만	183일 이상 ~ 274일 미만	1.25
만기 이자율 (2015.7.1 기준)		9 개월 ~ 12 개월 미만	274일 이상 ~ 367일 미만	1.35
		12 개월 ~ 18 개월 미만	367일 이상 ~ 555일 미만	1.40
		18 개월 ~ 24 개월 미만	555일 이상 ~ 735일 미만	1.45
		24 개월~30 개월 미만	735일 이상 ~ 915일 미만	1.60
		30 개월~36 개월 미만	915일 이상 ~ 1096일 미만	1.60
		36 개월 ~ 60 개월 미만	1096일 이상 ~ 1830일 이하	1.65
		60 개월		1.70
	변동	1년(3기	1.05	
금리형 1년(6개월 회		배월 회전)	1.25	

최종이율 (2015.7.1 기준)	- 고정금리형: 최고 0.75%(1개월 ~ 3개월 미만) ~ 1.70%(60개월) - 변동금리형: 최고 1.25%(6개월 회전)			
	- 분할인출은 만기(중도)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 횟수에 제한없이 인출이 1.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2. 퇴직급여의 연금형태 지 및 고정금리형	2 가입자(근로자)별로 횟수 우에는 인출횟수의 산경 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 지급	를 산정합니다.	
		2,2 2 1 13		
분할인출 이자율 (만기 이전에 특정 사유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적용 이자율) (세금공제전, 2015.7.1기준)	□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14 조 및 18 조 2 항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그 부양 가족이 질병 또는 부 상에 따라 6 개월 이 상 요앙을 하는 경우 ③ 5 년 이내에 가입자 가「채무자 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 정을 받은 경우 ④ 5 년 이내에 가입자 가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피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기타 천재지변등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□ 제도전환을 위한 가입자 제도전환 또는 가입자 이전 □ 국민은행 내 계약이전 □ 퇴직급여의 연금형태지급 □ 가입자의 사망	- 계약기간 12개월 미만 : 신규일에 고시된 해당 계약기간별 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자율 - 계약기간 12개월 이상 ○ 12개월 미만 : 신규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12개월제 만기이자율 ○ 12개월 이상 : 신규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자율	- 계약기간 12개월 미만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해당 계약기간별 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자율 - 계약기간 12개월 이상 이 12개월 미만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 정기예금 12개월제 만기이자율 이 12개월 이상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정기 예금 만기이자율	

	□ 퇴직연금 수수료 취득	-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이자율(가산금리 포함)		
	□ 교체에에	- 신규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 만기이자율	- 1년 미만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<u>일반정기예금</u> 만기이자율 - 1년 이상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정기예금 만기이자율	
	* 신규 또는 재예치 후 1개월 미민	<u> </u>		
	: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의	경과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중도	해지 이자율 적용	
	(단. 퇴직연금수수료를 취득할	할 경우에는 신규일 또는 재예치!	일에 적용된 이자율 적용)	
	■ 변동금리형			
	사 유	최초 만기 前	만기 재예치 後	
	□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			
분할인출 이자율 (만기 이전에 특정 사유로 예금을 인출하 는 경우 적용 이자율) (세금광제전,2015.7.1	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14 조 및 18 조 2 항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그 부양 가족이 질병 또는 부 상에 따라 6 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5 년 이내에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5 년 이내에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피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기타 천재지변등 고 용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 우	- 회전기간이 지난 부분 : 회전기간별로 회전기간 시작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자율 - 회전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 : 신규일에 고시된 잔여예치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만기이자율	- 회전기간이 지난 부분 : 회전기간별로 회전기간 시작일에 고시된 판가이자율 - 회전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잔여에치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 만기이자율	

	□ 제도전환을 위한 가입자 제도전환 또는 가입자 이전 □ 국민은행 내 계약이전 □ 퇴직급여의 연금형태지급 □ 교체애애 □ 퇴직연금 수수료 취득 * 신규 또는 재예치 후 1개월 미만 : 신규일 또는 최종재예치일의 (단. 퇴직연금수수료를 취득함		(가산금리 포함) 해지 이자율 적용
	■ 고정금리형(2011.12.19 (신규분부터 적용)	
	사 유	최초 만기 前	만기 재예치 後
중도해지 이자율 (세금공제전,2015.7.1 기준)	□ 계약해지 □ 다른 사업자 계약이전	- 신규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<u>일반정기예금 중도해지</u> <u>이자율</u>	- 1년 미만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<u>일반정기예금</u> 만기이자율 - 1년 이상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정기 예금 만기이자율
	- 신규 또는 재예치 후 1개월 ㅇ 신규일 또는 최종재예치일	미만 일의 <u>경과기간별 일반정기예금</u>	중도해지 이자율 적용

	■ 변동금리형				
	사 -	О П	최초 만기 前	만기 재예치 後	
		: - 호	전기간이 지난 부분 회전기간별로 회전기간 시작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자율 전기간이 지나지 않은	- 회전기간이 지난 부분 : 회전기간별로 회전기간 시작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자율	
		다 계약이전 1 1 1 1 1 3 3 예치 후 1개월 미만		- 회전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잔여예치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 만기이자율	
			경과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중	(세금공제전, 연%)	
		 기간		이자율	
만기후이자율	만기후1개월이내		만기이자율 X 50%		
(2015.7.1 기준)	만기후 1개월초과~3개월이내				
	만기후 3개월초과 0.5 - 만기이자율 : 신규가입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의 일반정기예금 고시이자율 적용				
이자지급방식	고정금리형 신규일 및 재예치일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자율로 셈하여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				
NANGOS	변동금리형 매 회전기간 시작일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자율로 셈하여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				
	-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아래의				
	재예치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재예치합니다				
	* 재예치 통지를 요청한 고객에 한하여 자동 재예치에 대한 내용을 고객이 지정한				
 자동재예치	이메일로 통지함	<u>합니다.</u>			
	구분	고정금리형 일 단위 계조	고정금리형 월(년) 단위 계좌	변동금리형 계좌	
	재예치기간	12개월	최초 가입기간과 동일 기간	최초 계약기간단위와 동일 기간	
계좌의 해지	영업점을 방문하여 해지				
예금자보호 여부	대 상	- 확정기여형,개인형 퇴직연금: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 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 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 는 별도로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 단,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 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.			
		이어 J란근건	<u>-</u> 끼지 <u></u> 포포됩니니,		

	<u> </u>
	- 확정급여형 퇴직연금: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 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3 유의 사항	
■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	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됩니다.
	민원)이 있을 경우 고객상담센터(☎1588-9999) 또는 KB 국민은행홈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(국번없이 1332) 등